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57

발의연월일: 2022. 7. 7.

발 의 자: 김정호·김병욱·김윤덕

서동용・소병철・신현영

어기구 • 윤후덕 • 전용기

허종식 · 홍정민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점심값을 5000원으로 상정해만든 한도액으로 지금의 물가 상승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09.81로 전년 동월 대비 7.4%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.

고물가, 고유가, 고금리, 고환율 4중고에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 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.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월 30만원 이하로 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러목).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러.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(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)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30만원 이하의 식사대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
세하지 아니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소득	
가. ~ 더. (생 략)	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
러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	러.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
사 또는 식사대	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
	<u>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</u>
	또는 근로자(식사 기타 음
	<u>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</u>
	자에 한정한다)가 받는 식
	사대로서 월 30만 원 이하
	<u>의 식사대</u>
머. ~ 저. (생 략)	머. ~ 저. (현행과 같음)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